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42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김상훈 · 김선교 · 진종오

이현승 · 김형동 · 윤한홍

최보윤 · 엄태영 · 이종욱

이달희 · 최은석 · 조지연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등을 광고하지 못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등을 광고하지 못한다.</u> <u>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u></p>
<p><u>④ ~ ⑦ (생 략)</u></p>	